

“문헌정보학의 영역을 지키지만 말고 확대하여 나가자.”

곽 동 철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기록관리학은 정말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까? 기록관리학은 문헌정보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있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학문들이 세월의 흐름속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세분화·전문화되어 오히려 분화 이전의 학문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지는 분야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분야는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문헌정보학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분야는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던 것인데.....’ 하면서 고개를 가우뚱할 만한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최근들어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금년 1월에 공포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록유산의 안전한 보존과 공공기관의 기록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공포와 함께 국내 일부 대학에서는 금년 3월부터 대학원 과정으로 ‘기록관리학’ 과정을 설치하였거나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학에 따라 문헌정보학 전문가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문헌정보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들에서는 이러한 과정에 문헌정보학 전문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연한 귀결이며, 오히려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며,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를 지칭하고,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수집·보존·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물관리기관”은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전문관리기관·자료관·특수자료관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관리기관”이라 함은 기록물관리기관중 영구보존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앙기록물관리기관·특수기록물관리기관·지방기록물관리기관·대통령기록관·기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기록물’은 ‘문헌정보’로, ‘기록물관리기관’은 ‘도서관’으로 용어를 바꾸어 놓으면 국가차원에서 도서관체계와 너무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기록물’이건 ‘문헌정보’이건 간에 유관기관들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이나 했으면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었겠습니까? “청와대에 들어가보니 빈 캐비닛만 남아 있더군요.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공문서를 하나도 만들지 않아 넘겨줄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면 회자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기록문화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의 처지와 비교하면 거의 흠잡을데 없이 훌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선시대까지의 중요한 자료들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등에 보존되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대통령기념관들이 통치사료의 체계적 정리 및 보존을 위해 도서관시설과 함께 건립된다는 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민 1인당 도서관구입비 예산이 1년에 스포츠신문 한 부도 살 수 없는 300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관을 계속 설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거나 또는 연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문헌정보학계에서도 국가의 기록물·관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록물의 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